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1호로 2018년 11월 13일 김화영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노령인구의 증가,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제한 폐지 권고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장위촉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통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통장 위·해촉 관련 연령상한 제한 폐지(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8. 10. 29 ~ 11. 2.):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연령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 위촉시 “30세 이상 65세 이하” 연령 상한 규정을 폐지하여, “30세 이상 주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 위촉시 연령상한 제한을 폐지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에서도 통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통장의 연령상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